

**【붙임 1】**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 - 호

**『 2016 경제총조사 』  
조사요원 모집공고**

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6. 3. 14.  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**■ 모집 예정인원(명) : 조사요원 85명**

**■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**

구분	인원	계약기간	단가	비고
조사관리자	14명	- 교육 : 5. 10. ~ 5. 27. (기간 중 4일) - 업무배정 : 6. 1. ~ 6. 3. (3일) - 준비조사 : 6. 7. ~ 6. 10. (4일) - 본 조사 : 6. 13. ~ 7. 22. (기간 중 30일)	54,350원	근로계약
조사지원관리자	2명	- 교육 : 5. 10. ~ 5. 27. (기간 중 4일) - 업무배정 : 6. 1. ~ 6. 3. (3일) - 준비조사 : 6. 7. ~ 6. 10. (4일) - 본 조사 : 6. 13. ~ 7. 22. (기간 중 30일)	49,580원	
조사원	63명	- 교육 : 5. 10. ~ 5. 27. (기간 중 2일) - 준비조사 : 6. 7. ~ 6. 10. (4일) - 본 조사 : 6. 13. ~ 7. 22. (기간 중 30일)	51,880원	도급계약 (상해보험 의무 가입)
예비조사원	6명	- 교육 : 5. 10. ~ 5. 27. (기간 중 2일)	51,880원	

\* 채용신청서 제출자 중 통계조사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에 대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며, 채용기간 및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\* 불성실 및 중도포기 조사원의 경우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(또는 미지급)

\* 예비조사원은 기존 조사원의 중도포기 시 투입하기 위한 조사인력으로 교육 2일 참석

\* 조사관리자는 본조사 완료 후 입력내검 업무 수행

**■ 제출 서류**

- 채용신청서 1부(붙임 1)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붙임 2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이중취업 확인)
- 기타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\*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

**■ 합격자 발표: 4.22(금) 오후 4시**

-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**■ 지원자 유의사항**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(통계조사에 한함)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(통계조사에 한함)
- 조사요원 교육 일정 참석가능자 (교육 불참시 채용 제외)
- 장애인, 저소득층은 채용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채용우대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됨

**■ 기 타**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 ☎ 330-1099, 담당자 변민정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■ 자격 및 수행업무**

인력 구분	우대조건	수행업무(요약)
조사관리자	·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· 조사원 통솔, 현장 조사지도 및 불용사업체 설득 등 조사관리가 가능한 자	·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·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· 담당 조사원의 조사 실적 파악 및 입력 · 조사 불용사업체 설득 ·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, 및 제출 · 기타 현장조사와 관련된 사항 등
조사원	·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·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	· 조사안내문 배부 및 인터넷조사 홍보 · 조사규모도 및 사업체명부 보완 ·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· 조사표 내용검토, 정리 및 제출 등
조사지원관리자	· 컴퓨터(엑셀, 워드 등) 자격증 소지자 · 조사업무를 성실히 지원할 수 있는 자	· 공무원 및 조사관리자 업무 지원 · 조사표 입력 ·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지원 · 기타 경제총조사 상향실 업무 지원

**■ 자격: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사망감,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**

-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(이중취업자 불가)
- 장애인,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 채용(관련서류 제출자)
- \*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,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,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

**■ 신청서 접수**

- 접수기간: 2016. 4. 1. ~ 4. 15. (15일간)
- 접수방법  
· 서대문구청 3층 정책기획담당관 방문접수 및 면접병행  
· 경제총조사 홈페이지(www.ecensus.go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시 면접일차 개별통보

**【붙임 2】 2016 경제총조사  
조사요원 채용신청서**

사 진 (3cm x 4cm)	성 명 (한글)		성 별	
	연락처	주 소 휴대폰	생년월일	
지원 업무	<input type="radio"/> 조사관리자 <input type="radio"/> 조사지원관리자 <input type="radio"/> 조사원			
지원 동	<input type="radio"/> 서대문구 ( )동			
최 종 학 력	<input type="radio"/> 고졸이하 <input type="radio"/> 대졸이하 <input type="radio"/> 대학원 이상			
경력사항 (통계업무)	연도	통계조사명 및 근무처	담당업무	
건 강 보 험 (정확히 기입)	<input type="radio"/> 지역가입자 <input type="radio"/> 직장가입자 <input type="radio"/> 피부양자 (직장보험가입자는 상실신고 이후 지원 가능)			
상해보험 가입 여부	<input type="radio"/> 가입 <input type="radio"/> 미가입 (**조사원 의무가입 사항임)			
전 산 자 격 증	<input type="radio"/> 컴퓨터활용능력 <input type="radio"/> 워드프로세서 <input type="radio"/> 기타( ) <input type="radio"/> 해당없음			
조사시 이용교통수단	<input type="radio"/> 자동차 <input type="radio"/> 자전거 <input type="radio"/> 도보 <input type="radio"/> 기타( )			
지원 동기	<input type="radio"/> 경제적 이유 <input type="radio"/> 여가활용 <input type="radio"/> 사회활동 참여 <input type="radio"/> 주위 권유 <input type="radio"/> 기타			
기 타 (우대)	장애인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		
	저소득층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		
	다자녀보육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 (** 3자녀 이상 보육 여부)		
	북한이탈주민	<input type="radio"/>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비대상		

\*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(허위 작성 시 미채용)  
\* 조사원의 경우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채용함  
\*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, 자격증 등) 제출 위와 같이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신청합니다.

2016. .  
신 청 자 : 서명(인)  
서대문구청장 귀하



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8조(의무 및 변상책임)**

- ① “근로자”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근로자”는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사용자”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사용자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.
- ③ 복수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3년간 통계청이 주관하는 조사의 채용을 제한한다.

**제9조(계약해지)** “근로자”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용어해석)**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사이에서 상이한 경우 “사용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016 . . . .

(사용자) 채용권자 : 서대문구청장  
문 석 진 ㉠

(근로자) 피고용자(  총관리자,  조사관리자,  조사지원관리자,  
 내검요원 )

성 명 : 서명 (인)  
주민등록번호 :  
주 소 :

- ③ “도급인”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업무진도 파악, 전달사항,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주 1~2회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“수급인”을 소집할 수 있으며, “수급인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**제4조(보험 가입)**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 (단,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,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)

**제5조(도급금액)**

- ①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한 도급 계약으로, 도급 금액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 
\* 단,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“수급인”의 도급금액은 제2조의 “도급인”이 지정한 조사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 세금공제 전 1,867,680원을 지급한다.  
○ 교육참석: 2일(103,760원)  
○ 준비조사 수행: 4일(207,520원)  
○ 본조사 수행: 30일(1,556,400원)을 합한 금액이다.
- ③ “수급인”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“도급인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도급인”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“수급인”에게 지급한다.
- ④ 지급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이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14일 이내(토요일, 일요일은 제외)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【붙임 6】**

**2016 경제총조사  
조사원 도급계약서(예시)**

2016 경제총조사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을 “도급인”이라 칭하고 계약 상대자를 “수급인”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2016 경제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업무내용)** “수급인”은 2016 경제총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.

- 담당 조사구 경계 및 업무량 확인
- 조사구역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 및 보완
- 조사안내문 배부
- 인터넷조사 홍보 및 참여번호 배부
-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
-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, 정리 및 제출 등

**제3조(계약기간)**

- ① “수급인”의 계약기간은 2016 경제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  
○ 교육: 2일 (2016. 5. 10. ~ 5. 27. 기간 중)  
○ 준비조사: 4일 (2016. 6. 7. ~ 6. 10.)  
○ 본조사: 30일 (2016. 6. 13. ~ 7. 22. 기간 중)  
(단, 본조사 기간은 40일이나,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30일 계약)
- ② “수급인”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부실,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)** “수급인”이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중 20%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 (조사표 내용검토 기간 7.25.~8.12 중 확인)

**제7조(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)** “수급인”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중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 또한 예비조사원이 교육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준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 포기한 경우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를 지급한다.
- ③ 본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된 실적에 따라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본조사 도급금액의 70%를 지급한다.
- ④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.

**제8조(업무량 배정 원칙)**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업무량은 1인 1일 표준 업무량을 기준으로 조사구 단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구 분	1일 표준 업무량	1인당 업무량
광계조업(10인 이상)	동	90개 내외
	읍	345개 내외
광계조업(10인 이상) 이외	읍	315개 내외
	면	285개 내외

**제9조(의무 및 변상책임)**

- ① “수급인”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별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수급인”은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도급인”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도급인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지체보상금)** “수급인”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표를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에게 지체 보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.

**제11조(계약해지)** “수급인”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용어해석)**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“도급인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016. . . .

(도급인) 계약권자 : 서대문구청장  
문 석 진 ㉠

(수급인) 계약 상대자 (조사원)  
성 명 : 서명 (인)  
주민등록번호 :  
주 소 :

**【붙임 8】**

**2016 경제총조사  
중도포기 확인서**

성 명 :  
생 년 월 일 :  
주 소 :

상기 본인은 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. [해당란에 체크표시(√)]

- 아 래 -

- 교육 완료 또는 준비조사 기간 중 중도포기
-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포기
- 본조사(방문면접조사) 기간에 중도포기  
( \_\_\_\_\_ 개 사업체의 조사표 작성을 완료함)

※ 중도포기 사유: ( )

2016년 월 일

중도포기자 : 서명(인)

확 인 자 : 서명(인)

**【붙임 7】**

**2016 경제총조사  
조사요원 서약서**

성 명 :  
생 년 월 일 :  
주 소 :

상기 본인은 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도중 포기하지 않고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 및 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
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(별칙)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서대문구청장 귀하

서약자 서명(인)

**【붙임 9】**

**2016 경제총조사  
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안내**

2016 경제총조사 조사원 운영을 도급계약으로 함에 따라,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조사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나 상해 발생 시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조사원 중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사원은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함. (보험회사를 선정하여 추후 안내)

1. 조사요원 안전과 관련하여 『조사요원 안전수칙』을 교육하여 사고예방 강조(조사지침서 『현장조사 요령』참조)
2. 사고발생 시 치료비,입원비 등이 소요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별도 가입한 상해 보험의 보상범위에 따라 처리
3. 실시기관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의 상해보험 가입 조치 및 행정처리 지원
  - 미가입자 상해보험가입 안내
  - 도급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 미가입자 의무가입 안내
  -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리 지원
4. 조사기간 중 추후 소급 가입 불가하며, 보험가입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보험료 반납 불가